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9. 23.(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9. 9.
- 회부일 : 2019. 9. 10. (의안번호 : 19 - 123)

2. 제안이유

-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 및 돌봄SOS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420명에서 1,454명으로 증원
 - 행정기구 개편(1국 2과 7팀 신설)에 의한 정원 증원 : 10명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 6명
 -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 18명
-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이하	전문경력관
현행	비율	(1)%이내	(5)%이내	(22)%이내	(32)%이내	(32)%이내	(7)%이상	(1)%이내
개정안	비율	(1)%이내	(5)%이내	(22)%이내	(33)%이내	(33)%이내	(5)%이상	(1)%이내

- 7급 : 32%⇒33%(+1%) / 8급 : 32%⇒33%(+1%) /
9급 : 7%⇒5%(△2%)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54	1,454				
일반직 계	1,443	1,443				
4급	8	6	1	1		
5급	63	36	1	9	1	16
6급 이하 계	1,370	1,370				

- 총 계 : 1,420명 → 1,454명 (34명 증)
- 일반직 계 : 1,409명 → 1,443명 (34명 증)
- 일반직 4급 계 : 7명 → 8명 (본청 1명 증)
- 일반직 5급 계 : 61명 → 63명 (본청 2명 증)
- 일반직 6급 이하 계 : 1,339명 → 1,370명 (31명 증)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부터 ~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5. 참고자료

- 비용추계의 기준
 -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내에서 예산운용
 - 인건비 단가는 2019년 직급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인건비 산출금액

- 정원증원(34명)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 연간 소요액('19년 기준) : 20억4천만원(시비 4억3천, 구비 16억1천)
- '19년 추가 소요액(2개월 기준) : 3억4천만원(시비 7천, 구비 2억7천)

(단위 : 천원)

직급	인원증감 (a)	1인당 평균 연간 인건비(b)	연간 인건비 증감액(c=a×b)	'19년 인건비 (d=c/12월×2)	비고
4급	+1	101,489	101,489	16,915	'19년 직급별 평균인건비 기준 산정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포함)
5급	+2	84,699	169,398	28,233	
6급	+7	77,464	542,248	90,375	
7급	+7	63,353	443,471	73,912	
8급	+17	46,072	783,224	130,537	
계	+34	-	2,039,830	339,972	
시비			425,250	70,875	돌봄18명 증원분 (시비75% 지원)
구비			1,614,580	269,097	

6.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조직기능 재설계 추진하고,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420명에서 1,45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91명에서 1,425명으로 34명 증감하는 내용으로 민선7기 구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조직기능 재설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 인력 직급분포를 보면 일반직 4급(1명), 5급(2명), 6급이하(13명)과 돌봄SOS추진을 위한 필요인력으로 사회직 9급(9명), 간호직 8급(9명)이 증감하는 내용임.

○ <현안업무 6명의 부서 및 업무내용>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의무배치
-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연차별 인력 요청
(행정안전부)
- 주택과: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 배치 요청
(국토교통부)
- 도시안전과: 폭염 등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업무
인력 증원 (건축안전센터팀 신설)
- 도시안전과: 「건축법」에 따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예방
-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력
요청(행정안전부)

○ <돌봄SOS추진 사업추진배경>

- 돌봄 욕구 수요 증가와 ‘돌봄 사각’의 문제
- 고령화(마포구 노인인구 50,544 명, 전체인구의 13.47%), 가족구조의 변화(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1.19%) 등으로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
- 가족 내 돌봄의 어려움(여성의 경제활동증가,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 약화 등)과 부담이 사회적 문제(동반자살 등)로 대두
- 돌봄 서비스 욕구는 보편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은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은 돌봄 욕구 높은 중증 이용자에게만 지원되거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제공

- 돌봄 서비스 자원 부족 및 복잡한 신청절차 등 서비스 이용 어려움
- 긴급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부족 및 제공까지 상당기간 대기하는 경우 많음
- 각 분야별(어르신, 장애인 등)서비스 행정절차 복잡하여 이용감소

○ <서울시 돌봄SOS추진 사업 설치·운영 계획일정>

※ 19년 시범운영 5개소 현황(2019년 2월 15일 공모선정)

- 성동(간호특화형), 노원(확대형), 은평/강서(기본형), 마포(통원형)
- 서울시 1차 시범운영 돌봄SOS사업 추진(5개구)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증원완료
- 권역별 5개소 시범운영 후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 5개소('19년) → 15개소('20년) → 25개소('21년)
- 서울시2차 돌봄SOS사업 추진(10개구 공모 중)

○ <서울시 돌봄SOS 시범사업선정 후 설명회 진행경과>

- 사업설명회 개최(5회) : 동주민센터(4.12.),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4.17), 노인복지 관련 기관(4.17.), 사회적경제기업(4.25.), 의사회(4.30.)
- 구·동 소통회의 개최(1회) : (.5.28.) / 구 자체교육(1회) : (8.7.)
- 교육 훈련 추진(9회) : 총괄리더(동장·과장) 과정, 돌봄 지원팀 과정, 돌봄센터장(복지2팀장) 과정, 돌봄 매니저 과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 <돌봄 SOS 사업 인원배치현황 및 18명 업무내용>

- 본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 2명 (사업총괄)
- 동주민센터 복지2팀 : 16명 (돌봄매니저, 9개 동)

구분	증원	세부내역	구분	증원	세부내역
복지정책과	2명	사회복지1, 간호1	망원1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공덕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망원2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도화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성산1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신수동	1명	사회복지1 -	성산2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서교동	1명	- 간호1	상암동	2명	사회복지1, 간호1

- 찾동 사업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저소득 복지대상자 중심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일반 시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
- 1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현금이 아닌 단기·일시보호, 가사·간병지원, 동행이동 등 신속히 제공

○ <찾동 사업과 돌봄SOS센터 사업의 비교>

구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사업대상	빈곤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65·70세 도래 어르신 및 출산가정	긴급한 돌봄욕구가 있는 주민으로 대상자 확대 - 19년 시범사업 : 노인, 장애인 주 대상 ※ 21년까지 일반시민 대상 확대
주요내용	- 현금·현물 위주의 소득보장 서비스 - 민간자원 연계 및 후원 취약계층 지원	- 복지·보건·의료 통합적 원스톱 돌봄서비스 제공 - 계약과 협업 관계에 기반한 민·관 연계
주요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서울형기초, 긴급복지지원 등 현금성 급여 지급 - 따뜻한겨울나기,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 민간자원 연계 취약계층 지원 -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문 강화 - 65·70세 도래 어르신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 방문간호서비스	- 일시재가서비스(연간 최대 60시간) - 단기시설서비스(연간 최대 14일) - 이동지원서비스(연간 최대 36시간) - 주거편의서비스(연간 최대 8시간) - 식사지원서비스(연간 최대 30식) - 안부확인서비스(지역 자원 활용) - 정보상담서비스(돌봄 매니저 제공)

○ <인건비 관련내용>

- 2019년 기준인건비는 1228억 7473만 7000원이며 이중 2019년 편성예산은 1200억 5215만 3000천원을 편성하고 편성 여유분은 28억 2258만 4000원임.
- 총인건비는 34명에 대한 2019년 기준 20억 4천만원(시비 4억3천, 구비 16억1천만원) 필요하며, 2개월 기준 3억4천(시비7천, 구비2억7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팀 신설과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른 구민의 건강증진업무(미세먼지), 세금업무, 건축물 노후건물 정비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는 인력이며, 돌봄SOS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추진인력 18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돌봄SOS사업의 검토사항으로

돌봄SOS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업으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시도별 각기 다른 모델 형으로 선도 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시범 5개구가 각기 다른 모델 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개구를 더 선정할 예정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찾동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현재 인구(1004만9607명) 중 약 14.4%인(141만 297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언론보도내용(2019.9.18 서울신문) 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해 보임..
- 다만, 돌봄SOS사업 시범사업 선정 후 사업설명 진행과정을 볼 때 의회에 간담회나 설명회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앞으로 단체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매칭사업 준비 시 대규모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 할 경우 필히 의회에 사전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지방의 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 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권한이 법률상 부여 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돌봄SOS, 주민자치회 등과 같은 사업은 인력증원과 매칭예산 편성 등 지방정부의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가 공모사업의 사업종료 시까지 예산지원을 한다고 조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건의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번 정원 조정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인력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 정책 사업은 바라보는 시각과 의도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인력의 증원에 대한 판단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배려와 협조가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양쪽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것으로 사료됨.